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2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박성민·조경태·김위상

박정하 • 이헌승 • 서일준

이인선 · 김상욱 · 박수민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 단 이용시설의 설치·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

- 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제13조 등).
-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 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 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 하도록 함(안 제25조).
- 타.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 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 가. 전동킥보드
 - 나. 전동이륜평행차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 형 이동수단 충전소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

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 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개인형 이 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

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 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 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 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및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 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 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

에 사용할 것

- 2.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한다.
-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 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수 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 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

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 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 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대여약관의 변경
 -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 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 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 제25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 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대여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본다.
-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 제2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8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시·군· 구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 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 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충전소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 2. 대여사업자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및 대여사업 현황
 -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 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자료제출 요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 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4. 대여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 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7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6. 제18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 위탁한 경우
- 7.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8.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 개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22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 12.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사업 경영을 한 경우
- 14.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벌칙

-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경영한 자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 3. 제1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 여사업을 경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 획을 변경한 자
- 2.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

- 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